

세무회계저널
제15권 제6호 2014년 12월 pp.321~346
한국세무학회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정재연**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품기부보다는 콘텐츠기부, 프로그램기부 및 인적기부(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콘텐츠기부와 프로그램기부는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교육기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둘째,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로 인정하여 별도의 세제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셋째, 재능기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 용역보다 높은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기부금 평가액을 계산하되, 적정 수준의 일일 한도와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자녀의 교육기부에 대하여 부모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기부 수혜자의 기부금확인서 발행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기부의 다양한 형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교육기부, 재능기부, 자원봉사, 용역기부

* 본 연구는 2012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

**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jjjung@kangwon.ac.kr, 010-3779-7445

논문접수일 2014년 11월 28일 1차수정일 2014년 12월 18일 2차수정일 2014년 12월 22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22일

I. 서론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이하 ‘교육부’라 함)는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교육기부 운동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교육부는 한국과 학창의재단을 2010년 12월 교육기부센터로 지정하고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공공단체와의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교육기부 행복박람회 개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마크)제 실시,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시상, 교육기부 매칭서비스 제공 및 대학생 교육기부단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들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며, 기부하는 쪽에서는 적절한 교육기부 방법을 찾기 어렵고, 기부를 받는 쪽에서는 교육기부를 제대로 받아들이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백은순 외 2012, 5).

2012년 이후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수행되면서 교육기부 네트워크 조성, 교육기부 제공자와 교육기부 대상자의 유인강화, 교육기부 우수사례 및 우수프로그램 홍보 강화,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홍보 강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백은순 외 2012, 149-159; 이영 2012, 6-8; 홍영란 2012, 13-15). 그러나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기부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특히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세무분야의 연구에서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서희열 외 2008, 김수성·문성훈 2014)는 많이 있으나, 교육기부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부를 다섯 가지 유형(금품기부, 콘텐츠기부, 프로그램기부,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교육기부 제공자(기업, 공공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원봉사활동(volunteer activity)”이라는 용어는 자발, 자주, 자유의지라는 뜻의 라틴어(voluntas)에서 유래된 것이다. 즉 자원봉사활동이란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와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과 시간을 제공해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임규진·이전오 2011, 28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원봉사활동은 자선적 기여행위로서 용역기부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차원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무상이전에 관련된 행위로 이해할 수 있고, 자선이나 기부라는 용어로 혼용될 수 있으며,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박훈 외 2010, 45).

한편 진지한 여가로서의 자원봉사를 기부행위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개념적 틀 내에서 “재능

기부(talent donation)”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유형의 기부와 무형의 기부를 분류하는 것으로서, 유형의 기부는 현금과 물품, 부동산, 신체의 일부(헌혈 등)를 기부하는 것이고, 무형의 기부는 시간과 재능, 기술을 나누는 자원봉사를 의미한다. 무형의 기부를 다시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와 ‘재능’이라는 특수한 활동을 통한 자원봉사로 나누어서, 재능기부를 넓은 의미의 자원봉사의 하위범주로 위치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재능기부에 해당하는 용어가 기술(skill)자원봉사로서 재능기부가 속한 개념적 범주가 자원봉사임을 분명히 한 동시에, 일반 자원봉사 활동과 달리 특수한 기술이나 기술을 활용한 자원봉사를 특화시킨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백은순 외 2012, 24).

교육기부(donation for education)는 “공공기관, 대학, 기업,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자원(재능), 물적 자원, 노하우, 현금, 현물 등을 유·초·중·고등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영 2012, 4). 연구자에 따라서는 교육기부를 용역기부 또는 자원봉사활동의 일부로 이해하고, 재능기부와 교육기부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부의 개념을 확장하여, 인적 자원, 즉 교육과 관련된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뿐 아니라 “유·초·중·고등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되는” 금품과 콘텐츠 및 프로그램도 모두 교육기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와 달리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위한 이발 봉사, 연주 봉사 등)나 봉사활동(연탄 나르기, 장애우 시설 청소 등) 등 교육활동에 활용되지 않는 그 밖의 용역기부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용역기부 전반에 대한 차등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기부에 대해 조세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기부가 단순히 지출이 아닌, 공익적 가치와 결과를 창출해 내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임규진·이전오 2011, 284). 교육기부는 공익가치가 크고 수혜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제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교육부 등 교육계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먼저 시행한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 용역기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콘텐츠기부와 프로그램기부는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을 교육기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둘째,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로 인정하여 별도의 세제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셋째, 재능기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지원

봉사용역보다 높은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기부금 평가액을 계산하되, 적정 수준의 일일 한도와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자녀의 교육기부에 대하여 부모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기부 수혜자의 기부금확인서 발행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기부 제공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장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및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교육기부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고찰한다. 제Ⅳ장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탐색하고,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선행연구는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와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신호(2011)는 교육기부를 외국에서 오랫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온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았으며, ‘아웃리치(Outreach)’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나누어주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Outreach 프로그램을 과학기술 영역, 인문사회 영역, 예술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는 교육기부 문화의 착근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자율(Autonomy)’과 ‘조절(Regulation)’ 사이의 균형을 들었다. 즉 교육기부는 참여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율’에 바탕을 둔 참여를 전제로 하며, 교육기부 운동 확산의 초기 단계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절’ 기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딜레마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조절’ 기능이 오히려 교육기부의 자율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이는 새로운 교육기부 문화의 정착을 더디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기부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영(2012)은 교육기부 활동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첫째, 교육기부 개념과 유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둘째, 교육기부 제공자와 대상자간의 연계를 도울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 셋째, 교육기부 활동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유인이 미흡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그는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기부 개념 정립과 함께 현황 파악 및 점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초기에는 공공기관이 교육기부 제공자와 대상자 간의 매칭(information clearing house)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교육기부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창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기부 제공자들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기부 시상, 교육기부 박람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 또는 졸업자가 교육기부에 참여하는 경우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교육기금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윤정(2012)은 교육기부가 타인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나의 공감능력과 감성자본을 풍부하게 만드는 일, 일과 놀이의 경계를 허무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교육기부가 지금까지의 기부활동과 차별화되는 면이 바로 쌍방향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들이 활동에 대한 지원의 상당부분을 국가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자생적이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기부로 특화된 사회적 기업이 더욱 많이 생기고 활성화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홍영란(2012)은 교육기부의 유형을 제시하고,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기부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교육기부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다양한 유인책의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교육기부 활동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의 물적, 인적 자원 및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공유함으로써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초·중등학교 대상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과 교사들의 흥미 및 관심에 얼마나 부응하는가 하는 것이다.

백은순 외(2012)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모 교육기부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국 규모의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기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 사례와 국외 사례로 나누어 학부모 교육기부의 우수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기부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부모 인식 개선, 학부모와 학교의 양방향 교류 활성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단위학교에서의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학교장의 리더십 강화, 교사의 효능감 강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및 수업 방법 개선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홍보 강화, 국가단위 교육기부 표준 마련 및 시스템 보완, 교육기부를 위한 교육체제 구축(재능기부자교육, 교사양성 및 교사연수 개편, 대학교수의 지역사회봉사 참여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 예시된 각종 분야에서의 조사연구 필요성, 교육청의 역할 강화 및 시·도와의 연계강화,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연구로서 대표적인 선행연구 2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갑순 외(2010년)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2를 통해 재해지역에서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고차원의 용역기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행 조세제도의 입장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용역기부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행위와 그 경제적 가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수혜자 역시 분명한 구분이 있으므로 단순히 귀속소득(imputed income)으로 처리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 취급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용역기부시의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법인이 근로자를 통해 용역기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기부의 범위에 포함시켜, 증여와 그 근간을 동일시하고 있다. 따라서 용역기부를 포섭할 시에 정률 또는 정액을 감안하여 해당 용역기부를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부와 관련된 사무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 및 기관을 설립하여 용역기부의 기부금 포섭 시 생길 문제점 대비는 물론, 기부금수령단체의 투명성 제고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규진 외(2012년)는 ‘기부’를 무상으로 또는 정상적인 반대급부의 지급 없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일반의 증여와 달리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대상을 ‘기부’로 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경제적 이익을 지출하는 행위(예를 들어 개인적인 소비)와 다르게 기부에 대해 조세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기부가 단순히 지출이 아닌, 공익적 가치와 결과를 창출해 내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21세기를 맞아 기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발전에 따라 마련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기부, 선진금융기법 등의 도입을 통해 허용된 기부유형 등으로 ‘기부’라는 경제행위가 발전해 왔다. 또한 일반인들이 자신의 개인시간을 투여해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능기부, 교육기부 등이 확산되고 있지만 조세제도의 경우, 20세기 초반에 외국에서 마련된 기틀을 수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나라의 문화나 새로운 기부형태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부인정 범위의 확장, 특히 재능기부활동과 같은 용역(Service) 제공에 대해 적절한 평가를 통한 기부인정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이상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연구들에서는 교육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용역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연구들은 용역기부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세제지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부의 특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육기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기부의 유형별로 교육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며,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정책당국에서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I. 교육기부의 개념적 이해

1. 교육기부의 유형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교육기부의 개념과 유형이 적립되어 있지 못하므로 주관기관, 기부주체 또는 연구자에 따라 교육기부의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KOREKA(Korea Oriented Resource & Education & Knowledge in Action) 운동¹⁾에서는 교육기부의 유형을 다음의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 기업의 첨단지식과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장/교사 연수, ②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③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④ 방과 후 학교 및 주말/방학 프로그램 운영, ⑤ 소외학교(학생)의 결연형 기부(1사1교 등), ⑥ 증대하는 교육복지 수요지원, ⑦ 기업의 첨단제품/시설/인프라 등을 교육용으로 기부, ⑧ 미래형 융합/첨단기술 분야 인재양성 지원, ⑨ 기업별 교육기부 대표브랜드 육성, ⑩ 특정지역의 교육개혁 전반 지원이 그것이다(홍영란 2012, 13).

교육기부는 지식·정보의 급증과 사회의 급변으로 적시학습(just in time education) 및 다양한 체험학습이 중요해지는 21세기에 사회 전체가 미래 인재 육성에 참여한다는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실과 학교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그 긴요함이 있다. 즉 학생과 교사 대상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이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첨단시설·장비를 활용한 체험·실습 프로그램 제공, 소외·낙후지역과 학교로 찾아가는 활동, 기업이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이뤄 그 지역의 교육혁신을 이끌어내는 광범위한 활동까지 교육기부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김윤정 2012, 9).

교육기부를 운영 주체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즉, 산(기업) 중심의 교육기부 활동, 학(학교, 대학) 중심의 교육기부 활동, 연(연구기관) 중심의 교육기부 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산(기업) 중심 교육기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장학금 지원, 의료 봉사, 연구비 지원, 교육 복지 사업(저소득층 자녀 위주), 도서 보내기, 사랑의 나눔 문화, 다문화 가정 돌봄 등의 방법이 있다. 주로 대학이 주체가 되어 시작되었던 학 중심의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은 대학교수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전문직 봉사(Professional service)에서 시작되었으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연구의 전문성을 대중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준 높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면,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에서는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현상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현재 지구에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알리기 위한 ‘NOAA Digital Coast’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장신호 2011, 20-22).

1) ‘KOREKA(코레카) 운동’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학이 하나가 되어 기관의 지적자산을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공여하는 지적재산 기부운동을 말한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부를 다음 <그림 1>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개인재능(문화·예술·체육 교육, 진로 등 멘토링, 강연 및 자원봉사), ② 프로그램 운영(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전문·관심 분야에 대한 강의·실습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③ 시설·기자재 기부(악기, 실험기자재, 체육기구, 미술작품 등을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④ 활동 지원(체험프로그램, 동아리활동 등에 필요한 차량·보험·시설, 멘토링 및 인력 제공), ⑤ 콘텐츠 제공(영화, 뮤지컬, 음악, 미술작품, 기관 보유 정보 등을 전체 또는 클립 형태로 제공) 등이다.

<그림 1> 교육기부의 유형(교육기부 사이트)



[출처] 교육기부 사이트(<http://www.teachforkorea.go.kr>)

한편, 서울특별시 교육청 블로그에서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기부 사이트와 조금 다르게 교육기부의 유형을 ① 인적자원 기부, ② 물적자원 기부, ③ 프로그램 기부 및 ④ 활동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2> 교육기부의 유형(서울특별시 교육청 블로그)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블로그(<http://seouleducation.tistory.com>)

또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기부를 인적자원 기부와 물적자원 기부로 나누어 그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인적자원 기부는 문화·예술·체육 교육, 진로 교육, 강연 등 개인의 경륜과 재능을 활용하여 학교교육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하며, 물적자원 기부는 기관 및 개인이 보유한 물적 자원(콘텐츠, 기자재, 작품, 시설, 장비, 공간, 기금 등)을 교육기관에 정기적 혹은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음 <표 1>에서는 인적자원 기부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표 2>에서는 물적자원 기부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인적자원 기부의 사례

기부 영역	활동 내용
지식	방과 후 학교 강의, 학습보조, 동아리활동, 명예사서, 교과목 멘토링 등
상담	학생상담, 부적응학생 및 이탈학생 사례 관리 등
재능	문화예술, 체육 분야, 사회지도층 인사 등 전문분야 강연, 작품제작 등
봉사	학교폭력 안전지킴이(학부모순찰대), 학부모 시험감독, 학부모 봉사단, 학교급식 자원봉사, 체험활동 안전 보조교사
모니터링	학교급식 모니터링, 수학여행 모니터링, 학교축제 모니터링, 수련회 및 체험활동 모니터링, 학급신문·학교신문·교지 모니터링, 공개수업 모니터링, 방과 후 학교 모니터링, 수행평가 모니터링, 사이버가정학습 모니터링
학교위원회 활동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분쟁조정위원회,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학교 예결산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학교평가위원회, 방과 후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 등

[출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http://tip.daum.net/question>)

<표 2> 물적자원 기부의 사례

기부 영역	활동 내용
프로그램	기관 및 개인이 보유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급식	무상급식 지원
물품	기관 및 개인의 물품 지원
시설 및 교통	기관, 지역사회, 개인소유의 시설 및 교통 지원
장비	기관,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하는 장비 지원
포인트	각종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 기부
교육활동비	교직원, 기관, 기업, 단체, 지역사회, 개인 등의 교육활동비 지원
장학금	교직원, 기관, 기업, 단체, 지역사회, 개인 등의 장학금 지원

[출처]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http://tip.daum.net/question>)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기부의 유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나,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기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교육기부를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기부 목적물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표 3>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3〉 교육기부의 유형 구분

기부목적물의 유형	기부 내용
금품기부 (현금 또는 현물 기부)	- 장학금·교육활동비 및 시설비 등 현금 기부 - 교육기자재 및 물품(교육용 컴퓨터, 악기, 실험기자재, 체육기구 등) 등 현물 기부 - 교육시설(강의동, 체육관 등) 기부
콘텐츠 기부	- 각종 콘텐츠(영화, 뮤지컬, 음악, 미술작품, 정보 등)를 전체 또는 클립 형태로 제공
프로그램 기부	- 학생체험 프로그램 및 교원연수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간·장비·차량 등 제공
재능기부	- 교육, 강연, 상담, 멘토링, 컨설팅, 공연 등 전문 역량 및 재능을 활용한 기부활동
자원봉사	- 봉사(학교급식 봉사 등), 모니터링(수학여행 모니터링 등), 학교위원회 활동(학교운영위원회 등) 등 재능기부 외의 일반 자원봉사 활동

교육기부 중 금품기부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금품과 대학에 교육비, 장학금, 시설비,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하는 대학발전기금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현행 세법 상으로도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기부에 대한 통계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교육기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교육기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목록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발간한 『이공일삼 우수교육기부사례집』에 의하면 기업·공공기관 및 대학 등이 제공하는 ‘체험 또는 학습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의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 및 창조경제를 이끌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라고 해도 ‘학습-심화-응용’이라는 목표와 단계별로 구성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거쳐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기 주도 학습력, 정보처리 능력 등 21세기가 요구하는 학습자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

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방과 후 교실(정기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을 갖춘 도심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기 중 진행되는 방과 후 소프트웨어 교실)’, ‘챌린지 캠프(평소 IT 학습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름과 겨울 방학에 열리는 3박 4일의 캠프)’ 및 ‘교사연수(전국의 정보교사와 대학생,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일 년에 두 번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그 외에도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온드림스쿨, IBM 스마트 과학캠프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둘째, 독특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앤티컴퍼니코리아가 제공하는 ‘연예인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계로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연예기획사 및 캐스팅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원하는 학생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을 찾길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아이들이 건전한 직업군으로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에 다가설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길거리캐스팅 사기 피해사례와 피해예방 교육 실시, 방송인이 되기 위한 신체훈련 및 준비단계 수업, 모의 오디션 등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간호장교 체험프로그램, 인천기상대의 직업체험프로그램,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 체험교실(색동나래교실) 등 다양한 직업 체험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셋째,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찾아가는 사랑의 금호아트홀’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금호아트홀의 일일 공연 기획자 체험을 통해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예술이 주는 아름다움과 감동을 지역 청소년과 주민에게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클래식음악으로 감성을 자극하고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손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직접 지역학교를 찾아가 유익하고 즐거운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넷째, 글로벌 체험프로그램으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주관하는 미래에셋 글로벌 문화체험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세계 금융선진도시로 성장한 중국 상해를 둘러보며 문화체험, 경제체험, 역사체험을 진행하며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찾기 위한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이다.

다섯째,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신한은행의 청소년 금융교육센터 프로그램이 있다. 신한은행 금융교육센터는 국내 최초로 실제 은행 영업점과 동일한 환경으로 마련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으로 머리로, 몸으로’ 금융을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금융교육 전용공간이다. 이를 통해 일회성 교육이 아닌 다양한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나아가 미래 세대들의 올바른 경제 및 금융관 형성에 기여하려는 사명을 밝히고 있다. 이 센터는 ‘한국금융사박물관’과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여 금융교육뿐만 아니라 박물관 관람 및 금융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견학 프로그램으로 솔로몬 로파크의 법 체험세상 관람프로그램이 있다. 솔로몬 로파

크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을 배우는 놀이터이며, 법 체험세상의 관람은 홈페이지 예약을 통한 사전 15명 이상 예약 팀과 개인 방문으로 실시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주말(토·일)에도 운영하고 월요일은 휴관이다. 법 체험세상 코너 해설과 진행은 저스티스홀 영화 관람 후에 팀을 나누어 한 팀씩 안내 선생님들이 데려가며 법 체험관 주요 코너인 입법 체험실, 과학 수사실, 모의 재판실, 체험 교도소를 순서대로 방문하며 진행된다. 그 외에도 박물관 관람 프로그램, 법원 견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탐방 등 다양한 견학 및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일곱째, 학생대상 프로그램보다는 아직 덜 활성화되어 있지만 단국대학교의 갈등코칭 전문가 과정 교원연수프로그램, 고양문화재단의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활동 및 교과 연계 방안 탐색) 등 교원연수 프로그램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음으로 많지는 않지만 콘텐츠기부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콘텐츠 기부의 사례로는 전국경제인 연합회의 온라인 시장경제교육 교구재 기부(기업가정신 애니메이션, 경제교육 티칭노트, 시장경제 VCR, 재미있는 경제수업, 경제원리 이해하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네이버 지식인의 서재 동영상 콘텐츠(인터뷰 영상 및 녹취록을 학교현장에서 독서 교육을 실시하기 전, 오리엔테이션 자료 영상으로 활용 가능) 기부, 사단법인 행복한 아침독서의 ‘행복한아침독서’ App 기부(2014년 6월에 정식으로 출시한 앱으로서 학교 현장 및 가정에서 독서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등이 있다.

교육기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지원 및 진로·직업체험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부가 주도하는 교육기부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기부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교육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기관 및 대학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많아져야 한다. 그러나 각 학교단위로 이루어지는 개인차원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도 교육기부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학부모 재능기부의 우수사례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의 ‘학부모 가르치미’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교육과 봉사에 관심과 역량이 있는 학부모를 선발하여 이들 중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단위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토요스쿨, 방과 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현장교육에 교육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그 외에도 ‘학부모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교육기부 사업, 자기주도 학습지도사 심화과정 수료자로 구성된 ‘나비나드 봉사단’이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 학부모 재능기부 희망자로 강사풀을 구성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교육품앗이 프로그램, 조손가정 상담봉사, 다문화 학부모 교육기부단인 ‘글로벌맘스’등 학부모 우수 교육기부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²⁾

2) 백은순 외(2012)의 연구보고서 중 ‘Ⅴ. 학부모 교육기부 우수 사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2. 현행 교육기부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는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부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 환원 및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관 및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를 발굴하여 교육기부인증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체험, 교사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자원 등을 일정 요건에 맞게 초·중등 교육에 기부하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직능단체, 규모 20인 이상의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이나 단체(사교육기관·단체), 부처, 교육청 및 지자체, 유·초·중·고등학교 및 개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육기부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교육부장관 명의의 교육기부기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패가 지급되고, 교육기부 마크 사용권한이 부여(기관홍보, 자사 제품 등에 활용 가능)된다. 한편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에 대해서는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 복과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 구성·운영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4년 3월 현재 278개 기관이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기관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현황

인증시기	인증기관 수	유형별				
		기업	공공기관	대학	대학생 동아리	기타(협단체)
’11년 9월	36	3	11	19	—	3
’11년 12월	26	7	6	11	—	2
’12년 8월	78	16	20	5	31	6
’13년 1월	49	12	21	6	6	4
’13년 8월	33	8	2	4	16	3
’14년 3월	56	6	4	9	16	21
합계	278	52	64	54	69	39

[출처] 교육기부 사이트(<http://www.teachforkorea.go.kr>)

한편,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단체·대학생 동아리·학교 등을 발굴·포상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교육기부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교육기부 대상은 교육기부 제공부문과 활용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교육기부 제공부문은 우수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의 제공으로 교육기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도모한 기관·단체 및 대학생 동아리 등을 선정하여 시

상하고 있으며, 교육기부 활용부문은 한정된 교육기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인성 교육을 훌륭히 실천한 유·초·중·고교를 시상하고 있다.

최근 기업뿐 아니라 대학 및 공공기관들도 이미지 제고 및 사회공헌활동의 일부로 교육기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와 교육기부 대상은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 어느 정도 유인이 되고 있다.

IV.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1. 교육기부에 대한 현행 세법상 세제지원 규정

현행 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금품기부에 국한되어 있다. 현행 세법상 기부금 규정 중 교육기부(금품기부)와 관련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과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현금 또는 현물)은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므로 기부자는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 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법인46012-3609, 1999.9.30), 학교발전기금은 ①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및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한편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본다(재경원법인 46012-77, 1997.7.18).

현행 세법상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소득과세 상 혜택을 주는 것³⁾을 제외하고는 용역기부에 대한 과세 상 혜택이 전혀

3)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 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없으며, 행정해석(예규)에서도 일관되게 용역기부(재능기부)를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있다. 관련 예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법규과-1350, 2011.10.13).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 기부금액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에 의하고,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액 산정을 위한 법정증빙서류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이며, 재능기부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득세과-429, 2011.5.24).

한편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득세과-1005, 2011.11.30).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불우이웃돕기를 위하여 극빈자에 해당하는 신장환자를 무상으로 진료하는 경우 당해 극빈자 개인에 대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공익성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의료업자는 당해 무료진료를 제공한 때의 시가를 당해 연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46011-5, 1997.1.4).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가 추천하는 신장병환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경우 그 치료비 상당액을 동 협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법인46012-740, 1997.3.13).

현행 세법상 교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법인과 개인 모두 금품기부(현금 또는 현물 기부)에 한해서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콘텐츠기부와 프로그램기부의 경우에는 기부목적물에 따라 세제지원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뉜다. 프로그램기부의 경우 체험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4)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간·장비·차량 등을 무상으로 제

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text{봉사일수} = \text{총 봉사시간} \div 8\text{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용·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 4)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시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

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5〉 현행 세법상 교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기부유형	기부주체	
	법 인 (기업, 비영리기관)	개 인
금품기부 (현금 또는 현물 기부)	○	○
콘텐츠기부	△	△
프로그램기부	△	△
재능기부	×	×
자원봉사	×	×

한편 사업자가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또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교육기부와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교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

교육기부에 있어 인센티브는 양날의 칼과 같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교육기부 활동을 한다면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기부는 이미 생명의 빛을 잃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교육기부 형태에서 인센티브가 없게 되면 현실적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하기 쉽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실제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선별적으로 주어질 필요가 있다(백은순 외 2012, 157-158).

의 규정이 적용된다.

교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한 일부 선행연구⁵⁾가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기부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특히 세제상의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재능기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러한 기부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정과 보상 즉, 최소한의 경비지원, 개발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표창 및 시상 등 프로그램개발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실 가능한 기본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송정애·임원선 2012, 306). 기부와 나눔 문화가 생활 속에 뿌리내린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풍성하다. 그런 만큼 물질적인 기부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시간, 다양한 무형의 자산을 나누는 활동들이 많다. 그리고 국가는 물질적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무형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타임뱅크나 타임크레딧 같은 제도를 통해 시간의 단위로 환산해 이를 역량으로 인정해주고 관리해준다(김윤정 2012, 11). 그러나 외국에서도 영국을 제외하고는 교육기부를 포함한 용역기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⁶⁾

교육기부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다양한 유인책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기부에 대한 조세 지원이 필요하므로 기업이 재정적 후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기부 참여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고양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기업 이미지 홍보와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홍영란 2012, 14). 개인적 차원에서의 교육기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면 단체 및 기업차원에서의 교육기부 활동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교육기부의 기본 취지가 “대가없이 제공하는 것”에 있고 일부 기업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교육기부활동을 해 오고 있으나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기본 목적을 고려할 때 우수기관 인증이라는 상징적인 인센티브 이외에 세제 감면 등 보다 실질적인 장려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서원주 2012, 37).

대기업과 공공기관(대학, 정부출연연구원 등)은 교육기부를 통해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킴으

5) 이영(2012)은 정부가 교육기부에 대한 조세지원 홍보와 자문을 하지만 조세지원 자체를 확대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기업의 사회공헌부서의 운영비용이 법인세 산정 시 공제되고 있으며, 사회공헌 재단으로의 기부의 경우도 기부금 공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미 기업의 기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 사회공헌부서 운영이나 재단운영을 통한 교육기부가 대기업은 용이하나 중소기업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6) 용역기부를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영국의 경우만이 직접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허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런가하면 일본 역시 법인세법 기본통달을 해석해 보자면, 영국과 유사하게 용역기부의 허용도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진다. 해당 국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용역기부 등, 기부 전체가 가지는 사회 전체적 효과를 고려한 제도의 보완이 본격적으로 절실하리라 사료된다(임규진·이전오 2011, 304).

로써 무형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세제지원의 유인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교육기부를 통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고, 개인(학부모 포함)들은 개인적인 만족감 외에는 교육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기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중요하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세제상의 인센티브(세금감면)이다. 현재 교육기부의 경우에는 교육기부 수혜자(일선 학교 등)가 기부자에게 특별하게 예우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기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라는 차원에서 교육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자원봉사 활동범위의 확대는 자칫 재정수입의 감소와 허위자원봉사활동 발생을 가능케 한다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먼저 재정수입의 감소문제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 일부에 대해 소득과세를 사실상 감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원봉사활동을 대체하는 국가의 용역제공에 따른 비용절감에 비하면 재정수입의 규모는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조작하게 된다면 과연 자원봉사활동을 누가했으며, 그리고 실제로 했는가, 또한 어디서 얼마간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력이나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맞게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성숙된 인식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박훈 외 2010, 118-119).

기부금이 사회적으로 특수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에,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이론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과연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함으로써, 국가가 사실상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공공적 이익 창출에 대한 재원을 조달해 주는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문의 중심에는 기부금을 수령하고, 이로 인하여 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촉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최초의 기부금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허용 제도의 도입 이유와 유리(遊離)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이는 사회 특수계층에 대한 지원(종교단체와 문화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조세제도 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만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가 하는 논란이 그 중심내용으로, 궁극적으로는 기부금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효과에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김갑순 외 2010, 81).

교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이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기부자보다는 교육기부의 목적물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일한 유형의 강연을 저명인사와 일반 학부모가 같이 하였을 경우 저명인사는 기회비용이 더 클 것이므로 더 많은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배제되어야 한다.⁷⁾

7) 선행연구(임규진 외 2012 ; 김갑순 외 2010)에서는 전문 용역기부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해서 전문용역

둘째, 교육기부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제지원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연주가가 학생들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지도하는 재능기부를 하는 경우와 학부모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일반봉사(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의 등교 안전 지킴이 봉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셋째, 기부자의 비용부담이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경우에만 기부로 인정하여야 한다. 기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자선적 행위가 기부이다(이은미 2009, 390). 따라서 기부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없거나 단순히 기회비용의 부담만이 지워지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교육기부 외의 다른 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기부의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기부와 달리 지나치게 많은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는 일당 5만원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교육기부에 대해서는 시간당 5만원을 기부금으로 인정한다면 형평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육기부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이유는 교육기부자를 예우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교육기부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교육기부 유형별 세제지원 방안

금품기부는 현행 세법상 이미 세제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금품기부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현행 세법상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콘텐츠 기부, 프로그램 기부, 재능 기부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세제지원 방안을 고찰하기로 한다.

가. 콘텐츠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교육기부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는 2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이나 개인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판매용이 아닌 자료나 정보 등이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판매용인 “윈도우7 소프트웨어”를 초등학교에 교육용으로 무상 제공하였다면 이는 전자에 해당할 것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홍보용으로 제작한 경제교육 동영상자료를 초등학교에 무상으로 배포하였다면 이는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기부자의 “하루 평균 소득액 × (봉사일수 × 0.4%)”를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용역기부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교육기부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교육기부 대상인 콘텐츠를 구분하는 이유는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이 기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즉, 기부자가 콘텐츠를 기부하였으나, 그로 인한 기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다면 그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Ⅲ장에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교육자료, 동영상 콘텐츠 및 비판매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교육기부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판매목적의 콘텐츠를 교육용으로 기부할 경우에는 그 콘텐츠의 시가(판매가)를 전액 기부금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 경우에도 그 콘텐츠의 시가를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 콘텐츠를 교육기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음반회사가 이미 제작된 음반을 교육용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음반의 시중 판매가는 장당 15,000원이고, 추가적으로 음반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저작권 사용료 등의 합계액은 3,000원이라면 후자의 금액만을 기부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프로그램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프로그램기부는 강연 또는 교육, 직업체험, 캠프(숙식을 포함), 견학,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기업들은 사회공헌 재단을 만들고, 사회공헌 재단에 기부금을 낸 후, 그 사회공헌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교육기부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모두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제공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박물관 노닐기” 프로그램과 같이 기업이 학교나 학생에게 직접 교육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단체(박물관)에 기부금을 내고, 그 공익단체가 무상으로 학교나 학생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직접 그 회사의 인력과 시설 등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콘텐츠기부와 마찬가지로 기부자가 부담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만을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⁸⁾ 예를 들어, A기업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60명을 초청(회사 버스 2대로 학생 수송)하여 회사 내의 강당에서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고, 회사 직원을 활용하여 강의를 하고, 회사의 시설을 견학한 후 점심(학생 1인당 원가 4,000원)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면 이 프로그램의 기부금 평가금액은 240,000원(=60명×4,000원)

8)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운영하는 기업이 초등학교생들을 초청하여 영화를 무료로 관람하도록 교육기부를 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영화관람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무료관람을 위해 투입되는 경제적 자원(실제로는 거의 없음)만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례로 B기업은 자체 연수원에서 고등학생 40명을 초청하여 1박 2일 직업 체험 캠프를 개최하였다. B기업은 외부강사 2명을 초청(100만원 지불)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제공한 식사는 100만원 상당액이었고, 외부에서 버스 1대를 임차(임차비용 50만원)하였다. 이 연수원은 다른 기업에 임대할 경우 숙소 1개당 4만원을 받고 있으며, 금번 캠프를 위해 숙소 10개를 제공하였다. 이 경우 외부강사료, 식사대 및 버스 임차료는 앞의 사례와 같이 기부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연수원 숙소사용료(40만원=4만원×10개)를 기부금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자체 시설의 무상사용 분은 기부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교육기부로서 공연용역(연극, 뮤지컬, 음악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공연에 소요되는 직접비용만을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기부에 있어 또 한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인력에 대한 보상 문제이다. 기업의 직원이 업무시간 중에 회사 업무의 연장선에서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를 받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박물관 직원이 업무시간 중에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학생들에게 박물관에 대한 소개와 교육을 담당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업무의 일부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말 또는 일과 후 시간 등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한 세제지원과는 별도로 그 개인의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로 인정하여 별도의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현행 세법상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은 다른 인적기부(용역기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는 제공되는 용역의 전문성과 난이도가 다르므로 차별적으로 세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능기부는 강의, 멘토링, 상담, 예술 지도, 체육 지도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원봉사에 비해 더 많은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 다른 기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용역은 당시 국가적인 재난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단결력을 보여준 사례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나 반대 여론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교육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인데 인센티브가 왜 필요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기부(인적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의 당위성을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근본 목적은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것이지 기부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부금을 평가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기부 중 재능기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재능기부(법정기부금으로 규정)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용역보다 기부금을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재능기부는 전문분야에 대한 강연, 전문적인 학생상담 및 전문가(예술, 문화, 체육, 과학 등)로서의 학생 지도 및 체험교육 등 전문성이 전제된 활동으로만 제한하여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용역 기부 평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으나, 복잡한 방식은 납세협력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므로 기부금 평가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용역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당 5만원을 기부금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6,250원이 된다.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이 보다 높은 시간당 단가(예를 들어 25,000원~100,000원⁹⁾)를 인정하되, 대신 적정수준의 일일 한도와 연간 한도를 정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일 한도를 두는 이유는 일반 자원봉사와 달리 재능기부를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연간 한도를 두는 이유는 기부금 평가액(세금 감소액)을 과도하게 인정하게 되면 자발적인 기부로서의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며, 연간 한도는 보험료, 교육비 등 다른 공제항목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교육기부 중 자원봉사는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용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부금을 인정하되, 재능기부와 마찬가지로 연간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용역과 인근 학교에서의 자원봉사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부당공제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려 부당하게 공제받고자 하는 압력 또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재능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먼저 시행한 후 자원봉사에 대한 세제지원은 교육기부 외의 다른 자원봉사용역과 연계하여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9) 재능기부에 대한 시간당 단가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는 재능기부의 내용, 기부자의 전문성, 기부의 공익성 정도, 다른 기부와의 형평성, 사회적인 합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이 아닌 사례만을 제시하였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학 강사가 주당 3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3배에 해당하는 수업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강의 시간의 4배에 해당하는 주당 근로시간을 산정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재능기부에 대해서도 일반 자원봉사 시간의 4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6,250원의 4배인 25,000원을 시간당 단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학 강사료 산정기준(2014년 현재 시간당 80,000원, 장기적인 교육부 목표금액 100,000원)도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녀의 교육기부에 대하여 부모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도 거주자 본인의 기부금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보통 대학생인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학생은 교육기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이므로 대학생인 자녀의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를 부모의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이요건에 대한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

넷째, 기부 수혜자(교육부,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의 기부금확인서 발행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기부금확인서 발행대장을 비치하여 재능기부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기록하고, 이를 증빙(활동사진과 프로그램 등)과 함께 인터넷(교육청 단위의 교육기부 사이트)에 올려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교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요약

기부유형	세제지원 방안
콘텐츠기부	① 판매목적의 콘텐츠를 교육용으로 기부하는 경우만 지원 ② 기부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인정
프로그램기부	① 기부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인정 ② 자체시설의 무상사용 분은 기부금에서 제외 ③ 공연용역의 경우 직접비용만 기부금으로 인정 ④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의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로 인정하여 세제지원
재능기부	① 재능기부의 범위를 명확화 ②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보다 더 높은 시간당 단가를 인정하되, 일일 한도와 연간 한도 설정
자원봉사	①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 ② 교육기부 외의 다른 자원봉사용역과 연계하여 세제지원 방안 마련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공통	① 자녀의 교육기부에 대하여 부모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비 ② 교육기부 수혜자의 기부금확인서 발행을 엄격하게 관리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기부를 금품기부, 콘텐츠기부, 프로그램기부,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교육기부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과거의 교육기부는 대부분 금품기부(대학발전기금 또는 학교발전기금)가 중심이었고, 세제지원도 금품기부에 국한되어 있었다. 최근의 교육기부는 금품기부보다는 콘텐츠기부, 프로그램기부 및 인적기부(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품기부보다는 콘텐츠기부, 프로그램 기부와 인적기부(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콘텐츠기부에 대해서는 판매목적의 콘텐츠를 교육용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만 기부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 콘텐츠를 교육기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기부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기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만큼만 기부금으로 평가하고, 자체시설의 무상사용 분은 기부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공연에 소요된 직접비용만을 기부금으로 보고,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재능기부 또는 자원봉사로 인정하여 별도의 세제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셋째, 재능기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자원봉사용역보다 높은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여 기부금 평가액을 계산하되, 적정 수준의 일일 한도와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단 재능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먼저 시행한 후 자원봉사에 대한 세제지원은 교육기부 외의 다른 자원봉사용역과 연계하여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다.

넷째, 자녀의 교육기부에 대하여 부모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기부 수혜자의 기부금확인서 발행을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부는 공익가치가 크고 수혜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세제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교육부 등 교육계에서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먼저 시행한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 용역기부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육기부의 다양한 형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세제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물론 교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여러 방편 중 하나일 뿐이며, 세제지원만으로 교육기부가 활성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용역기부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탐색하지는 못하였다. 교육기부에서 더 나아가 용역기부 전반에 대한 차등적인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고찰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참고문헌

- 김갑순 · 정지선 · 임규진. 2010. “세법상 기부금 출연대상 범위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16-1 : 75-113.
- 김수성 · 문성훈. 2014. “소득세 특별공제 한도 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 세무학연구 제31권 제1호 : 177-210.
- 김윤정. 2012. “공생발전을 위한 쌍방향 나눔, 미래에 대한 투자 교육기부”. 교육정책포럼 227 : 9-11.
- 박 훈 · 이상신. 2009.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 토론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백은순 · 강소연 · 이해영 · 김세화 · 임현아. 2012. “학부모 교육(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서원주. 2012. “영국의 교육기부 사례와 시사점”. 교육정책포럼 227 : 34-37.
- 서희열 · 심충진 · 조영탁. 2008.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 9-35.
- 송정애 · 임원선. 2012. “지역사회 재능기부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 291-308.
- 이 영. 2012. “왜 교육기부인가,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육정책포럼 227 : 4-8.
- 이은미. 2009. “기부금세제에 관한 소고 -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제도를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25권 제4호 : 383-413.
- 임규진 · 이전오. 2012. “용역기부와 기부신탁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9권 제1호 : 283-324.
- 장신호. 2011. “교육기부의 개념, 운영 사례, 해결과제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센터. 2014. “이공일삼 우수교육기부사례집”. 한국과학창의재단.
- 홍영란. 201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교육정책포럼 227 : 12-15.
- 교육기부 사이트. <http://www.teachforkorea.go.kr>
- 서울특별시 교육청 블로그. <http://seouleducation.tistory.com>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 <http://tip.daum.net/question>

A Study on the Taxation Support Plans to Promote Donation for Education*

Jae-Yeon J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taxation support plan to promote donation for education, as an incentive to the donators for education.

Focusing on contents donation, program donation, and human service donation (talent donation or volunteer activities), rather than money don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taxation support plans.

First, as for contents donation and program donation, in order to donate contents or program for education, only the additional economic losses incurred to the donators should be evaluated as donation.

Second, as for human resources who participate in a donation program for education in their off-duty time, the don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talent donation or volunteer activities of the donators, and taxation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them.

Third, the scope of talent donation should be defined clearly. Regarding talent donation, unit price per time should be applied higher than that for volunteer activities in a special disaster area when evaluating the donation. Meanwhile, proper level of maximum donation amount per day and year should be set.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lated systems so that parents can get a tax benefit from the donations for education given by their children. Issuing a certificate of donation should be strictly managed for donato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lassifies various kinds of donations for education by type and suggests proper taxation support plans suitable for each type.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motion of donations for education and settlement of a new paradigm of donation culture.

〈Key words〉 donation for education, talent donation, volunteer activity, service donation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12 Research Grant fro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jjjung@kangwon.ac.kr